

 보건복지부		보 도 자 료 4월 8일(월) 행사시작(14: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9. 4. 8. / (총 10매)	담당부서	아동권리과
과 장	변 호 순	전 화	044-202-3430
담 당 자	권 고 운		044-202-3446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현장전문가와 직접 소통

- 2019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교육 실시(4.8~9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8일(월)부터 4월 9일(화)까지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을 대상으로 '2019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호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준비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18년 기준 264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아동의 연령별·수준별 자립지원프로그램 진행, 자립계획 수립,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실시

○ 올해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등 새로운 신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역대 최다인 215명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 지급 (4월~)

** 주거(보증금·임대료 무료, 관리비만 부담)와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6월~)

- 보건복지부(주최)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주관)은 2012년부터 매해 ‘자립지원전담요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아동 자립정책 방향과 신규 사업 관련 지침 교육, 자립 관련 토의·사례 발표, 업무소진 예방을 위한 치유(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자립지원요원들이 모인 이번 교육이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위탁보호가 끝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붙임> 1. 2019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계획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개요
 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개요
 4. 신규사업 안내문, 포스터, 홍보 책자

붙임 1 2019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계획

□ 행사 개요

- (행사명)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 교육
- (날짜) 2019. 4. 8.(월)~4. 9.(화)
- (장소) 코모도호텔 및 경주 일대
- (주최 및 주관)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 (참석대상)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기타 관계자 등

□ 행사 주요 내용

- 2019년 아동 자립 정책 방향 안내
- 자립수당 신청, 수령, 활용 방법 및 자체 교육 지침 안내
- 자립수당 관련 시·도 시설별 자체 교육 수행 방안 토의 및 발표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등 신규 사업 소개
- 보호종료(예정)아동 사례발표
- 업무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붙임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개요

□ 필요성

-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

* '18년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2,606명

** 보호종결 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31.1%),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 ('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

□ 지원 내용

- (지급대상) '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지급금액)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 (사례관리)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연계
- (지급기간) '19.4월~12월(시범사업)
- (소요예산) '19년 약 133억 원(국비 98.5억 원 / 지방비 34.3억 원)

□ 기대 효과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성공률 제고

붙임 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개요

□ 필요성

- '17년 보호종료 아동은 2,593명, 5년간 약 1만 2500명이 보호종료
 -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 전세 주택·영구임대 주택 등 LH 공공 주거 우선 지원, ▲ 자립지원시설('17, 12개소) 입소 지원
- 그간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동은 여전히 주거 불안노출
 - 지역 편차, 이자 부담 등으로 여전히 대부분 아동들은 스스로 주거 문제 해결,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 우려
 - * '17년 보호 종료 아동(2,6천명) 중 32.2%만이 정부 지원을 통한 주거 해결
 - 주거 위주 단편적 지원으로 체계적 자립 지원 연계는 부족
 - 기술·경험, 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비·주거비 등 조달과 구직 활동을 병행하여 자립 지연 요인*으로 작용
 - * 청년층 평균 구직활동 기간은 8.4개월인 반면, 보호종료 아동은 약 25.6개월('16) 소요

□ 지원 내용

- LH 보유 주택 등 활용, 아동 개인별 원룸형 임대 주택 지원
 - 보증금·월세는 무료, 관리비만 부담(월 10만원 정도)
 - 확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세탁기·냉장고·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 구비(1호당 150만원 범위내), 아동 부담 최소화
- 선발된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사(30호당 1명)를 통해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 연계 등 실시, 자립 성공률 제고
 - * 자립·일자리 정보 제공, 고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학교·기업 연계 등

붙임 4 신규사업 안내문, 포스터, 홍보 책자

□ 안내문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동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예시 A 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년 7개월을 지내다 만기 퇴소한 경우 → A아동양육시설(6개월) + B공동생활가정(1년 7개월) = 2년 1개월 인정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시 포함

- 단, 보호종료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인정자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급금액



-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입니다.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시설총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신청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2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총사자는 재직 증명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이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통합 사례관리를 지원하여
소득·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1,813원) 인 자

신청지역

- '19년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7개 시·도가 참여합니다.

지원내용

- 1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청년 매입임대주택(원룸형 위주) 240호를 지원합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 보증금·월세는 무료이며,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주 시 내에 예치금(100만원)을 맡겨야 하며 계약종료 시 미납 관리비, 파손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줍니다.
- 2 주거환경조성**
 - 세탁기·냉장고·가스레인지·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가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3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취업·학업 등 자립 정보 제공, 진학·직업훈련·생활·의료 등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지원을 발굴 및 연계해줍니다.
 -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 경비를 지원합니다. (연 최대 240만원)
 - 사례관리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방문·내방·유선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4월 30일
 - ※ 각 지역 수행기관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신청방법

-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1 필수 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 확인서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 2 추가 제출 서류**
 - 아동자립지원단장,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시·도·시·군·구청장 등의 추천서(선택사항)
 - ※ 추천서는 선택사항으로,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포스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지급!

자립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대상 

지급금액 

신청기간 

신청서류 

신청방법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①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②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지급
- 자립수당 지급일 : 매월 20일
-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시작
- ①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단, 입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 요청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 가능
(단,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리 신청)

※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 참조



□ 홍보 책자 [겉지]

Q&A

자립수당

Q 언제까지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2019년은 시범사업으로서 12월까지 지급합니다. 본 사업 시행 시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됩니다.

Q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A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거지원

Q 보호종료 후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호종료 지역과 관계없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 수행기관 명단은 3월 말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재

Q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실연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취업·학업 등 자립 정보 제공, 가능한 급여·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
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소득 지원

-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 ▶ 만 30세 미만 :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 ▶ 만 24세 이하 : 근로소득공제 확대
 - * (기존)40만원+추가30% → (변경)50만원+추가30%

주거 지원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실시 (240호)
 - ▶ 원룸형 주거지원(임대료 무료, 관리비만 부담)
 - ▶ 자립 정보,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사례관리
 - * 2019년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7개 시도가 참여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개별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 <http://jarip.or.kr>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홍보 책자 (속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금액 :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지급
- 지급일 : 매월 20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시작

신청서류

① 필수 제출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②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 가능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② 우편 또는 팩스신청

-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단, 제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등



Q&A, 신청서식, 수행기관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jarip.or.kr>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다만,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1,813원) 인 자

지원방법

- 내 청년매입임대주택 240호 지원 : 6월 입주
 - 보증금, 임대료 무료
 - 관리비, 예치금(100만원) 본인 부담
-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가구 구비
- 자립정보,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사례관리 : 7월 이후
 - 매월 20만원(연 최대 240만원) 상당 자립 경비 지원

신청지역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 ~ 4월 30일

신청서류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보호종료 확인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관계기관 추천서(선택사항) : 선정 시 가점 부여

신청방법

-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 제출
 - 수행기관 명단 및 주소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재